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830 발의연월일 : 2021. 10. 12.

발 의 자 : 김예지 · 추경호 · 위성곤

이명수 · 김선교 · 구자근

김석기ㆍ이 영ㆍ김태흠

엄태영 · 이종성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·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음.

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복제가 가능한 저작물의 대상을 어문저작물 외에 악보, 그림, 사진, 표 등도 포함하고, 저작물의 소비가 영상매체 로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장애인을 위한 복제대상을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고, 시각장애인, 청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인은 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3조, 제33조의2 등).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중 "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"를 "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(이하 "시각장애인등"이라 한다)을 위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"을 "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"로, "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·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"를 "저작물 및 그와 관련된 2차적저작물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변환하여 복제·배포·공연 또는 전송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항에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"을 "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등과 그 보호인의 범위와 시각장애인등이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의 범위는"으로 한다.

다만,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시각장애인등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시각장애인등과 그 보호인은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및 그와 관련된 2차적저작물을 시각장애인등이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다. 다만,시각장애인등이 공표된 저작물 및 그와 관련된 2차적저작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.

제33조의2제1항 중 "변환할 수 있고, 이러한 한국수어를"을 "변환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,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·배포·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"를 "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·배포·공연 또는 전송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인의 범위는"으로 한다.

다만,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청각장애인 등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인은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및 그와 관련된 2차적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다. 다만, 청각장애인 등이 그 공표된 저작물 및 그와 관련된 2차적저작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3조(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 |제33조(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 제 등)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 제 등)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 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복제·배포할 수 있다. 장애가 있는 사람(이하 "시각 장애인등"이라 한다)을 위하여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 ② 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)은 영리 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 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 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 ------ 저작물 및 그와 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관련된 2차적저작물을 시각장애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인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・배포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・배 포ㆍ공연 또는 전송할 수 있다. 또는 전송할 수 있다. <단서 다만,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신설>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시 각장애인등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 보호인 <신 설>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3조의2(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제 복제 등) ① 누구든지 청각장 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 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,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・배포・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.

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해당시설의 장을 포함한다)은 영리

은 시각장애인등	-의 개	인적	٥]
용을 위하여 공	표된 저	H작물	및
그와 관련된 2차	-적저즈	구물을	시
각장애인등이 인]지할	수 있	노
록 하는 대체자	료로	변환히	- 여
복제할 수 있다	. 다만	·, 시각	-장
애인등이 공표된	저작	물 및	ユ
와 관련된 2차적	저작돌	불에 힙	- 법
적으로 접근하여	이용	-하는	경
우에 한한다.			
<u>④</u> 제1항부터 제	3항에	따른	시
각장애인등과 그	보호	인의	범
위와 시각장애역	인등이	인지	할
수 있도록 하는	대체지	·료의	범
위는			
33조의2(청각장이	매인 등	등을 위	한
복제 등) ①			
	<u>변환</u> 형	<u> </u>	
.			
2			

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 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 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 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 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 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복제・배포・공 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

---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로 변환할 수 있고, 이러한 자 자료로 변환하여 복제・배포・ 공연 또는 전송할 수 있다. 다 만,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청각장애인 등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> 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인 은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 용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및 그와 관련된 2차적저작물을 청 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 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다. 다만, 청각장 애인 등이 그 공표된 저작물 및 그와 관련된 2차적저작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청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인

령으로 정한다.

의 범위는-----